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7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9.

발 의 자:문진석・김 윤・박홍배

정성호 · 이정문 · 강훈식

김교흥 • 박용갑 • 김문수

이재관 · 정준호 · 윤종군

박정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(구동축전지)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,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,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을 증진하려는 것임(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7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

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5(핵심장치등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제31조의6(핵심장치등 정보 공개) ① 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안정성인 증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인증받은 핵심장치등의 제조사, 제품명 및 성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,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

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장치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 니한 자

제84조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4. 제31조의5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	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30조의7(핵심장치등의 안전성	제30조의7(핵심장치등의 안전성
인증) ① ~ ③ (생 략)	인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	4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	
증을 취소할 수 있고, 자동차	
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자동	
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・	
조립・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	
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	
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자	
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	
·조립·수입 또는 판매의 중	
지를 명하여야 한다.	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
	결함이 발생한 경우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31조의5(핵심장치등 결함으로

<신 설>

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5. (생 략)

인한 시정조치 등) 국토교통부 장관은 핵심장치등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31조의6(핵심장치등 정보 공개)

① 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안 정성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인증받은 핵심장치등의 제조사, 제품명 및 성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 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,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.

일부개정법률

제792	조(벌직)	 	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u>5의2.</u> ~ <u>5의4.</u> (생 략)

6. ~ 19. (생 략)

제8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2의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~ 6. (생 략) ③ ~ ⑥ (생 략)